

예 산 총 칙

2014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00,571,331	9,017,140
일반회계	237,514,765	7,125,443
특별회계	63,056,566	1,891,697
공기업특별회계	7,600,155	228,005
의령친환경골프장지방직영기업공기업특별회계	7,600,155	228,005
기타특별회계	55,456,411	1,663,69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098,893	212,96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85,380	17,561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056,386	31,692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19,090,114	572,703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7,557,203	226,716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8,300,000	249,000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2,161,496	64,845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9,260,054	277,802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346,885	10,407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479,274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7,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